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3655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21.

제출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채납처분의 중지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(생략)	제16조(채납처분의 중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.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6조제2항 (채납처분의 중지)	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에 대한 채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채납처분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 ⇒ 기존 운영 중인 심의 기구를 활용하는 바 재정비용 발생에 영향이 없음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제2항 (채납처분의 중지)	- 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○ 금번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법률안은 채납처분 집행중지에 대한 심의 절차 신설을 통해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제도의 운영을 체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것으로, 법 개정에 따른 예산 수입 증감 추계 곤란
--

III. 부대의견

○ 해당없음

IV. 작성자

○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·국장
구해리	이경은	김민정	김정선 국장 직무대리

○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구해리	044-205-3880	ecclipt@korea.kr